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인력 3명(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1. 00. ~ 1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립농업과학원의 근로자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근로자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8급 1명) 및 국립식량과학원의 근로자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근로자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8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23”을 각각 “525”로 하고, 공업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 다음에 “보건주사보 1”을 신설하며, 공업서기 11 다음에 “공업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을 신설하고, 공업서기보 “2”를 “3”으로 하며, “전기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25”를 각각 “527”로 하고, 공업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 다음에 “보건주사보 1”을 신설하며, 공업서기 12 다음에 “공업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을 신설하고, 공업서기보 “2”를 “3”으로 하며, “전기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45”를 각각 “347”로 하고, 공업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 다음에 “보건주사보 1”을 신설하며, 공업서기 9 다음에

“공업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을 신설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46”을 각각 “348”로 하고, 공업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 다음에 “보건주사보 1”을 신설하며, 공업서기 9 다음에 “공업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을 신설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35”를 각각 “337”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31”을 “333”으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26”을 각각 “327”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22”를 “323”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⑤ (생 략) <u><신 설></u>	제3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립농업과학원의 근로자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근로자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8급 1명) 및 국립식량과학원의 근로자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근로자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8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u>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4]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23</u>	<u>525</u>	+2
일반직 계	<u>523</u>	<u>525</u>	+2
·	·	·	
·	·	·	
공업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		
<u>보건주사보</u>	<u><신 설></u>	<u>1</u>	+1
·	·	·	
·	·	·	
공업서기	11		
<u>공업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u>	<u><신 설></u>	<u>1</u>	+1
·	·	·	
·	·	·	
공업서기보	<u>2</u>	<u>3</u>	+1
·	·	·	
·	·	·	
<u>전기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5]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25</u>	<u>527</u>	+2
일반직 계	<u>525</u>	<u>527</u>	+2
·	·	·	
·	·	·	
공업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		
<u>보건주사보</u>	<u><신 설></u>	<u>1</u>	+1
·	·	·	
·	·	·	
공업서기	12		
<u>공업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u>	<u><신 설></u>	<u>1</u>	+1
·	·	·	
·	·	·	
공업서기보	<u>2</u>	<u>3</u>	+1
·	·	·	
·	·	·	
<u>전기운영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별표 6]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45</u>	<u>347</u>	+2
일반직 계	<u>345</u>	<u>347</u>	+2
·	·	·	
·	·	·	
공업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 사보	1		
<u>보건주사보</u>	<u><신 설></u>	<u>1</u>	+1
·	·	·	
·	·	·	
공업서기	9		
<u>공업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u>	<u><신 설></u>	<u>1</u>	+1
·	·	·	
·	·	·	

[별표 7]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46</u>	<u>348</u>	+2
일반직 계	<u>346</u>	<u>348</u>	+2
·	·	·	
·	·	·	
공업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 사보	1		
<u>보건주사보</u>	<u><신 설></u>	<u>1</u>	+1
·	·	·	
·	·	·	
공업서기	9		
<u>공업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u>	<u><신 설></u>	<u>1</u>	+1
·	·	·	
·	·	·	

[별표 8]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35</u>	<u>337</u>	+2
일반직 계	<u>335</u>	<u>337</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31</u>	<u>333</u>	+2
·	·	·	

[별표 9]

국립축산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26</u>	<u>327</u>	+1
일반직 계	<u>326</u>	<u>327</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22</u>	<u>323</u>	+1
·	·	·	